

## 제9차 CODEX 식품의 수출입 검사 및 인증제도 분과위원회 회의결과

조 미 영 / 보건복지부 식품위생심의위원회 연구위원

### I. 서 언

제 9차 CODEX 식품의 수출입검사 및 인증제도 분과위원회(이하 CCFICS라 칭함)는 42개국 대표와 11개 국제기구 대표가 참석하여 총 147명이 참석한 가운데 12월 11일(월) 호주 퍼스 Hyatt Regency 호텔에서 AQIS 기술자문관인 Digby Gascoine 주재아래 개최되었다.

금번 회의의 주요 의제로는 위생조치의 동등성판정, 수입식품관리제도, 품질보증제도, 증명서작성 및 발급지침 등으로서 식품 무역시 국가간 기술장벽이 되어왔던 다양한 규제조치에 대한 실질적인 부분을 논의하였다(표 1 참조). 의장이 의제 논의 순서를 달리하여 진행하게 되면서 식품의 수출입검사 및 인증제도 분야의 중요한 실행 지침서들이 단계 진행을 하게 되었다. 의제별 논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 II. 의제별 주요 내용

가. CODEX 타분과위원회에서 회부된 사항(의제 2)

Codex 사무국 Mr. David Byron는 47차 집행이사회 결과등을 소개하고 Traceability와 관련하여 Codex 생명공학 작업반 및 동물사료 작업반에서 traceability 개념이 검토되었으며 금번 회의 전주(12. 5.~8)에 개최된 제6차 북미 및 남서태평양 지역조정위원회에서도 Codex내에서 traceability의 논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된 바 있음을 알렸다.

나. 일반공인증명서 양식 및 증명서 작성·발급지침(초안)(의제 3)

동의제는 8차 동분과위원회 회의(00. 2. 21~25)에서 5단계로 채택된 후 47차 집행이사회(00. 6)에서 5단계로 승인되어 금번 회의에서 7단계로 논의되는 것으로 캐나다, 미국, EC, 브라질, 미국,

표 1. 제9차 CCFICS 회의 의제

의제번호	회의 의제명	문서번호
의제 1	의제 채택	CX/FICS 00/1
의제 2	CODEX 타분과위원회에서 논의된 사항	CX/FICS 00/2
의제 3	일반 공인증명서 양식 및 증명서 작성·발급지침(초안) - 의견(6단계)	CX/FICS 00/3 CX/FICS 00/3-Add.1
의제 4	수입식품관리제도 지침(초안) - 의견(3단계)	CX/FICS 00/4 CX/FICS 00/4-Add.1
의제 5	식품규정에 부합하기 위한 품질보증제도 활용증진지침서(초안) - 의견(3단계)	CX/FICS 00/5 CX/FICS 00/5-Add.1
의제 6	식품검사 및 인증제도 관련 위생조치 동등성 판정지침서(초안) - 의견(3단계)	CX/FICS 00/6 CX/FICS 00/6-Add.1
의제 7	식품검사 및 인증제도 관련 기술규정 동등성 판정지침서(초안) - 의견(3단계)	CX/FICS 00/7 CX/FICS 00/7-Add.1
의제 8	국제 교역시 식품관리긴급사건 발생시 위해관리 지침에 관한 토의문서	CX/FICS 00/8
의제 9	수출식품관리제도 제안서	CX/FICS 00/9
의제 10	기타 사업 및 향후 작업	
의제 11	차기 회의날짜 및 장소	
의제 12	보고서 채택	

칠레등에서 국가의견을 제출하였다. 주요 논의 핵심사항은 다음과 같다.

#### A. 서언

- 미국에서 증명서 발행 기관으로 제삼기관(third party)을 포함하고자 하였으나 제삼기관이라도 정부기관 및 공인기관에 제한해야 한다는 의장의 설명아래 증명서 발행기관을 정부기관 및 공인기관으로 범위를 제한하였다.

#### B. 범위

- 증명서 발행 요구 조건으로 건전성(wholesomeness)에 대한 의미가 모호하다는 의견제시로 “suitability for consumption”으로 정정하였다.
- 동·식물위생증명에 관련하여 동지침에 포함되는 사항은 아니나 식품품질 및 안전성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였다.

#### C. 정의

- Certifying Authorities를 문서에 기재된 Certifying bodies로 정정하여 용어 통일을 기하였다.

#### D. 원칙

- 미국은 증명서 발행시 여러장을 요구하거나 중복 발행을 최소화 하자는 의견을 제시하여 반영되었다.

#### E. 표준서식

- 싱가포르, 영국의 제안에 따라 증명서를 여러 장으로 발행하는 경우 증명서에 확인번호(unique identification number)를 기재하도록 하였다.
- 수출후 증명에 대하여 여러 의견이 분분하였으나 이 상황은 예외

적인 상황이라는 EU, 프랑스, 네덜란드의 의견과 일반적이라는 미국, 호주의 의견이 엇갈렸으나 수출입국 관할당국간에 일정한 합의가 있다는 전제아래 수출후 증명을 인정하자는 내용으로 정정하였다.

#### F. 화물세부사항

- 증명서 기재사항에 도착지 국가명과 온도관리등 수송 및 취급 규정을 추가하였다.

#### G. 증명서

- 증명서 자료로서 수출국의 보건상태(health status)는 포함되나 동·식물건강상태는 해당사항이 아닌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 국가 규정에 대한 적합성 증명 대상으로 규격, 생산 및 공정규정까지 확대하기로 하였다.

#### H. 인증담당자의 책임

- 인증담당자는 인증시 식품의 생산시점과 증명서 발행시점 사이에 적용규정에 대해 알고 있는 상황을 인증해야 하며 또한 서명시점의 상황도 알고있어야 한다는 것으로 수정하였다.

#### I. 서류증명서 작성지침

- 용어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Duplicate 삭제하고 Copies로 통일하였다.

#### J. 증명서 교체

- 증명서 교체사유에 손상과 분실 등의 사유를 추가하였다.

#### K. 증명서 폐기

- 수입국의 관리당국은 수출업자에게 증명서의 폐기정보를 복사나 전자전달수단으로 가능한한 신속

히 통보하는 것으로 하고 수출국은 화물이 수출국의 관리를 받지 않는 상황에서 수출되고 있는 경우 수입국의 관리당국에게 이 사실을 통보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합의하였다.

## □ 합의사항

논의결과, 인증서 발행기관범위, 수출 후 증명서 발행, 동·식물건강증명 포함여부, Duplicate와 Photocopy 용어규명, 증명서 발행기관과 사후책임기관등에 대한 입장차이가 있었으나 회원국간 적절한 협의 끝에 8단계로 24차 총회에 상정하기로 하였다.

### 다. 수입식품관리제도 지침서(초안)(의제 4)

동문서는 1996년 4차 식품의 수출입 검사 및 인증제도분과회의시 멕시코 정부에서 제안하여 45차 집행이사회에서 작업승인후 8차 당분과위원회(00. 2) 회의시 회원국간 조항별검토시 의견일치를 보지 못하여 재기안하여 금번 회의에서 4단계로 재논의하게 된 것이다.

우리나라, 터키, 미국, 캐나다, 체코, 인도, 뉴질랜드, 스페인, EC, 태국, 브라질 및 칠레에서 자국의 의견을 CRD로 제출하였으나 동의제 논의순서를 바꾸어 수요일 오후에 논의하여 실질적으로 회원국의 충분한 의견을 나눌만한 시간이 부족하였으며 합의를 보지 못한 조항에 대하여는 Drafting Group으로 회부하는 등 의장의 신속한 진행으로 동지침서를 5단계로 상정하였다.

동의제에서는 수출국의 식품관리제도 인정, 수입업자의 관리인정등 일부조항에서 수출입국간의 양분된 의견차이를 보였으나 전체적인 구성에 합의를 이루었고 일부 문장을 수정하여 5단계로 상정되었다. 주요 핵심 논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 A. 일반의견

- EU를 대표한 프랑스 대표는 동지침서는 수입식품관리제도로써 1항의 경우 수출국에 대한 조건이 설정되어 있는데 동지침서가 법령이 아니라 수입식품관리제도에 대해서만 적용할 수 있는 지침이 되도록 단순화하자고 제안하였다.

### B. 수입식품관리제도 일반특성

- EU를 대표한 프랑스 대표는 "Priority focus on the health protection of consumers"을 명료화하기 위하여 "precedence to the protection of consumers over economic and trade considerations"로 정정하자고 요청하여 반영되었고 "outcomes/objectives"를 levels of protection"으로 정정하기로 하였다.

### C. 3.1 국내 식품규정과 일관된 수입 식품 규정

- 3.1 조항제목에서 "equivalent"를 "consistent"로 상기한 조항과 일관된 자구를 사용하기로 하였다.
- 5항의 경우 수입식품 관리시 여러 고려해야할 요소중 농약 또는 수의약품에 대해서만 zero tolerances를 제시한 사항은 부적절하므로 삭제하자는 EU 의견이 반영되었다.

D. 3.2 명확히 규정되고 투명한 법령 및 운영절차

- EU에서의 수출국과의 인증약정 개발에 대한 사항을 11항으로 이동시키고 수출국의 관리제도 평가를 추가하자는 제안이 반영되었다. 우리나라는 EU 의견에 동의하며 11항중 수입업자 인정 사항을 법령화하는 사항이 잘못 오용될 우려가 있고 정부기능이 아니므로 삭제하자고 하였으나 의장이 실재적인 변경은 어려우므로 동사항을 drafting group에 회부하기로 하였다.

E. 3.5 수출국의 관할당국에서 실시하는 식품관리제도 인정규정

- EU에서는 동지침서가 수입식품 관리제도임을 고려할 때 13항을 삭제하거나 bracket 처리하도록 제안하였으나 의장은 동조항이 경우에 따라 수입식품관리제도에 포함된다고 설명하였고 그럴 경우 스위스에서 일방인정협정(unilateral recognition agreements)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수용되어 존치하기로 하였다.

F. 3.6 국가내 일관된 시행

- 3.6조 제목을 “consistent”에서 “uniform”으로 정정하였다.

G. 4.1 관리시점

- 우리나라는 수입식품의 안전성확보를 위해 수송 및 유통단계도 관리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여 수송 및 유통 관리시점 추가하기로 하였다.

H. 4.3 검사빈도수 및 유형

- 23항에 적합성이력과 건강위험등의 과거 이력사항등을 포함시키기로 합의하였다.

I. 4.4 시료채취 및 분석

- 공식분석은 정부 또는 공인실험실에서 수행하는 것으로 합의하였다.

J. 4.5 결정기준

- 동조항에 청원제도(Appeal mechanism)를 추가하여 수정하기로 합의하였다.

K. 비상상황관리

- 31항을 ‘식품안전사고발생시 정보교환지침서(CAC/GL 19-1995)’ 및 ‘수입식품의 부적합처리시 국가간 정보교환지침(CAC/GL 25-1997)’을 근거하기로 합의하였다.

L. 수출관리인정

- EU에서는 32, 33항은 동분과위원회 다른 사항의 중복사항으로서 수입관리업무의 기본적인 기능이 아니므로 두조항을 삭제제안하였으나 두조항이 일단 존치상태에서 drafting group에 회부되었고 33항의 경우 수입국에서 시설(facilities)에 접근이 가능한 경우에만 수출국 정부인증기관 또는 공인인증기관과 인증협정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으로 재조정되었다.

M. 기타 고려사항

- 우리나라는 수입업자가 공급업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관리는 상업상 거래관계이므로 동문장 삭제를 주장하였으나 이후 의견은 “alternatives to traditional

inspections” 제목을 “other consideration”으로 정정하였다.

- 수출국에 식품관리제도가 있는 경우 수출국의 감사제도로 수정하는 방향으로 합의하였다.

#### N. 제도검증

- 44항에 ‘식품의 수출입검사 및 인증제도의 성안, 운영, 평가 및 인정지침서(CAC/GL 26-1997)’의 제9조를 인용하기로 하였다.

### □ 합의사항

논의결과 지난번 8차 회의(00. 2)와 달리 전체구성에 대하여 회원국간 합의를 이루었으며 합의를 보지 못한 조항에 대하여는 Drafting Group으로 회부하는 등 의장의 신속한 진행으로 동지침서를 5단계로 24차 총회로 상정하기로 하였다. 24차 총회(01. 6)이후 차기 회의시 논의사항과 서면의견을 고려하여 Drafting Group에서 검토하기로 하고 이후 6단계로 정부의견을 수렴하여 10차 CCFICS(02. 2.)에서 논의하기로 하였다.

※ Drafting Group - 호주가 주축이 되고 우리나라, 캐나다, 프랑스, 인도, 일본, 모로코, 멕시코, 영국 및 미국 등 10개국

라. 식품규정에 부합하기 위한 품질보증제도 활용권장지침(초안)(의제 5)

동의제는 8차 회의(00. 2)에서 호주, 캐나다, 덴마크, 프랑스, 인도, 뉴질랜드, 남아프리카, 미국등 8개국이 작성한 문서로 토의 결과를 반영하여 스위스,

EC가 참여하여 개정후 금번 회의에서 재논의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David Byron은 ISO에서의 HACCP와 ISO 9000 통합 국제기준설정에 대한 현황을 알렸고 의장은 동사항이 동분과위원회의 업무분장에 따라 총회에서 위임한 사항이라는 점을 소개하였다.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여러 회원국간에 의견교환을 하였으며 그 의견은 다음과 같다. 미국대표는 지침서 내용 중 업체와 직접 연결된 조항이 상당히 있으며 그 조항은 부적절하므로 삭제제 제안하며 정부기관에서 동지침서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범위가 명확해야 함을 지적하였다. 또한 업체전문가가 공식감사수행 행위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였다.

프랑스대표는 품질보증제도에 대해 너무나 강조되어있고 향후 1) 정부의 규정에 부합하기 위하여 업체에서 품질보증의 사용 2) 품질보증 담당정부공무원이 사용하기 위한 절차 3) 품질보증 사용증진에 대한 지침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뉴질랜드대표는 HACCP와 품질보증제도의 관계조항과 품질보증제도 요소조항은 별첨으로 하고 전반적으로 HACCP에 너무나 강조를 많이 하고 있으며 정부평가 및 인증조항을 확대하자고 제안하였다.

캐나다 대표는 HACCP를 강조하게 되면서 정부관리시 품질보증사용에 대한 지침 규정이 감추게 되었다며 용어 사용문제를 지적하였으며 브라질대표는 지침서 개발에 동의하였다. 인도대표는 HACCP는 식품안전제도의 유일한 요소로서 식품위생의 일반원칙에서 이미 사용하고 사항이라며 HACCP에 너무나 많은 강조를 두었다고 지적하였다.

태국, 중국, 말레이시아는 동지침서의 유보를 주장하였다. 동문서에 GMP와 HACCP를 도입하여 회사로 하여금 적정보호수준에 부합하도록 하였으나 지침서 내용상 품질보증제도를 의무로 사용하도록 되어있으나 수출국은 생산공정시 품질관리제도를 사용결정권한이 있음을 이야기하였다. 독일대표는 품질보증에 대한 ISO 9000 규격이 개정중에 있음을 언급하였다.

### □ 합의사항

동분과위원회는 지침서의 목표가 회사에서 품질보증제도를 구축하고 있는 경우 정부와 공인검사 및 인증기관에게 자문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확인시키고 상기한 의견과 서면의견을 토대로 향후 작업이 요구되는 지를 결정하고 Drafting group에게 수정 요청하기로 하였고 3단계로 의견수렴하여 차기 10차 회의에서 재논의하기로 하였다.

※ Drafting Group : 호주, 캐나다, 덴마크, 프랑스, 인도, 일본, 모로코, 네덜란드, 뉴질랜드, 남아프리카, 미국, EC, 스위스

마. 식품수출입검사 및 인증제도 관련 위생조치 동등성판정 지침서 (초안)(의제 6)

동사안은 제7차 회의에서 제안되어 46차 집행이사회('99. 6)와 23차 총회('99. 6)승인으로 작업이 시작된 것으로 8차 회의(00. 2)에서 동문서가 식품검사 및 인증제도 관련 위생조치에 관한 동등성결정을 위한 지침이 되어야 한다는 점에 합의하였고 47차 집행이사회(00.

6)에서도 제도규정에 강조점을 두어 식품안전, 품질 및 적합성을 포괄한 식품관리제도 동등성 결정지침서 개발필요성을 인정하여 뉴질랜드, 아르헨티나, 호주, 캐나다, 프랑스, 일본, 미국과 EU에서 기안하여 4단계로 동회의에서 논의한 것이다. 주요 핵심논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 A. 서언

- CODEX 모든 회원국이 WTO 회원국이 아니라도 WTO/SPS 협정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명기하기로 하였다.

#### B. 범위

- EU를 대표한 프랑스 대표는 4항에서 조치 자체보다는 식품 수출입검사제도와 관련된 위생조치만을 다루자고 제안을 수용하였다.

#### C. 정의

- 인도에서 위해분석에 관하여 논의된 CODEX 정의를 넣자고 제안하여 수용하기로 하였다.
- 위생조치(sanitary measure)에 관하여 식품으로 전이될 수 있는 질병도 고려되어야 한다는 의견과 영국에서는 위생조치가 광범위해야 신중히 고려하자는 의견, 사료를 통해 전달되는 위험과 관련하여 기존 작업반이 있으므로 사료로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을 조정하여 WTO/SPS 협정 Annex A 1. b)항과 c)항 모두 식물을 제외한 위생조치에 관한 정의를 수용하고 사료도 포함하기로 하였다.

\* 위생조치 : 첨가물, 오염물질, 독소 또는 식품뿐만아니라 사

료에 기인한 위해 관리조치로  
범위확대

- 위해정의를 추가하고 위해관리를 삭제하였다.
- 적정보호수준(Appropriate level of protection)에 대하여 다양한 의견이 교환되었다. 인도와 필리핀의 경우 적정보호수준 결정시 과학적 정당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하여 의장은 적정보호수준을 달성하기 위한 위생조치는 과학적인 근거를 토대로 해야 하지만 적정보호수준은 다분히 정치적이며 국가의 가치판정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또한 조치설정 및 유지방법을 제시한 WTO/SPS 협정 2, 3, 5, 7조를 고려할 수 있다고 권고하였다.
- 동등성(equivalence) 정의에서 우리나라는 bracket 처리된 수출국의 증명책임 문구에 대하여 '식품의 수출입검사 및 인증제도의 성안, 운영, 평가 및 인정에 관한 지침서(CAC/GL 26-1997)' 9항에 의하여 bracket 삭제를 제안하였고 캐나다, 미국 등에서 '동등성협정 지침서(CAC/GL 34-1999)'의 정의를 인용하자라는 의견이 있었지만 의장이 '식품의 수출입검사 및 인증제도 원칙(CAC/GL 20-1995)' 13항에 의거 우리의 의견을 수용하였다.

#### D. 위생조치와 동등성결정

- 의장은 위생조치는 SPS 협정과 일관된 것이고 분류는 현재문서를 근거로 한 것임을 설명하였는데 EU에서 분류가 모든 예

가 되지 않다면 7(a) transport infrastructures와 7(c) methods of sampling and inspection을 추가하자고 제안하여 수용하였다.

- 9(d) 위생조치 비교시 위해평가를 사용하여 과학적인 근거를 강화하기로 하였다.

#### E. 동등성판정 일반원칙

- 10.1항에서 프랑스 대표는 CODEX 모든 회원국이 WTO 회원국이 아니므로 SPS 협정을 삭제하고 새로운 문구를 제안하여 수용되었음. 미국의 의견에 따라 적정보호수준은 정량적이며 정성적일 수 있다는 문구를 추가하였다.
- 우리나라는 10.2항과 관련하여 수입국이 동등성판정대상조치의 ALOP를 제시한다는 것은 SPS 협정에 없다는 지적에 대하여 의장은 SPS 협정 5.8조 및 7조(투명성)에 해당한다는 의견제시하여 협의하에 조정. EU 대표는 동조항 존치 주장하여 존치하기로 하였다.
- 우리나라는 10.8항과 관련하여 동등성증명시 위해평가를 사용하는 경우에 대하여 동등성판정은 제도평가이므로 위해분석이 되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하여 의장은 위해정보전달이 포함되므로 적절하지 않다고 말하였고 존치하기로 결정하였다.
- 우리나라는 10.10항과 관련하여 수입국이 동등성판정시 수출국의 경험을 고려한다는 내용중 경험이라는 것은 모호하다는 지적 아래 Knowledge로 수정하였다.



- EU에서 수입국은 수출국을 대상으로 감사 및 검증절차를 수행할 수 있다고 제안하여 신설조항을 설정하기로 하였다.
- 투명성 강화 차원에서 10.11항에서 이해당사자가 협의에 참여하도록 확대시켰다.

#### F. 동등성판정절차

- 동등성판정결과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 중재모델에 대하여 광범위한 토의결과 추후 검토하기로 합의하였다.

#### G. 판정

- 동등성판정시 모든 이해당사자에게 실재적이며 합리적인 범위안에서 투명성을 유지하기로 하였다.
- 21항에서 위생조치의 동등성판정시 고려해야 할 예는 중복되며 불충분하다는 의견하에 삭제하기로 하였다.

#### □ 합의사항

동조치에 관한 단계진행에 대해 위생조치, 동등성판정절차등 논란의 소지가 많은 요소가 있어 정부와 이해당사자와 협의를 필요하다는 영국, 인도, 보츠와나, 브라질, 말레이시아, 멕시코등 여타 국가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5단계로 상정하기로 결정되었으며 24차 총회시 가능하다면 8단계로 신속결정을 고려하기로 하였다.

#### 바. 식품검사 및 인증제도의 기술규정 동등성 지침(초안)(의제 9)

동의제는 23차 총회(99. 6)에서 46차 집행이사회(99. 6)의 의견을 토대로 동

의하여 수출입검사 및 인증제도중 기술규정의 동등성 지침 작업이 개시되었고 금년 47차 집행이사회(00. 6)에서 위생이외의 품질과 적합성평가등의 식품관리제도 동등성 설정 필요성을 인정하였다. 이작업은 8차 동분과위원회 회의(00. 2.)에서 위생조치뿐만아니라 기술규정도 별도로 작업을 추진하되 향후 한문서로 통합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작업하기로 한 것이다.

국가마다 작업추진에 찬성하는 대표단과 문제점을 지적하는 대표단등 양분화하기도 하였으나 금번 논의시 전반적인 의견 수렴후 차기 회의에서 3단계로 검토하기로 하였다. 주요 핵심 논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 프랑스 대표는 EU 여름 휴가로 인해 drafting group 작업에 참여하지 못한 점에 아쉬워하였다.
- 일부 대표단은 위생조치의 동등성판정과 통합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고 또다른 대표단은 위생조치와 기술규정의 동등성판정 과정은 유사해도 근거가 다르므로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 동분과위원회는 당분간 두가지 지침을 별도로 개발하기로 하였다.
- 동분과위원회는 “동등성” 정의를 위생조치동등성판정 지침과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합의. “Technical requirement”를 TBT의 “technical regulation” 정의와 일관되게 사용하기로 하였다.
- 또한 동등성의 판정에서 수입국이 수출국에서 동등성결정 대상 조치의 운영 집행행위를 검증하기 위한 절차를 구체화하기로 하였다.

## □ 합의사항

동지침(초안)은 호주, 프랑스, 남아프리카, 미국 및 EC등 Drafting group에게 회부되어 서면의견과 구두의견을 토대로 동문서를 새로 작성한 후 차기 회의에서 3단계로 검토하기로 하였다.

사. 국제간 교역으로 식품관리긴급사건 발생시 위해관리 지침에 관한 토의문서(의제 8)

동의제는 8차 회의(00. 2)시 식품안전사고에 관한 정보가 빈약한 상황에서의 수출입조치를 위한 지침부재, 시기적절한 정보교환규정 강화, 개별 식품안전사고시 특정 원인 관련사항을 고려하여 식품관리상 안전사고발생시 지침을 논의하자고 호주에서 제안하게 되어 금번 회의에서 의제로 상정된 것이다. 문서를 작성한 호주 대표는 동문서가 향후 식품안전사고발생시 위해분석적용과 정보교환, 식품비상대책계획모델, 식품유통범위, 식품의 제삼국으로의 재수출, 수출입국간에 정보교환에 관한 점을 작성했음을 설명하였다.

여러 의견교환가운데 국제교역시 식품관리상 비상상황에 대한 지침설정에 대하여 전반적인 합의에 이르렀으며 다음사항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제안되었다.

- 특정식품 비상관리계획 또는 일반 지침
- 정보부재와 시기적절한 위해평가부재로 인해 비상상황에서 건전한 위해관리와 위해정보전달 관행적용의 어려움.
- 위해정보전달 확대 필요성
- 수입국과 수출국 관리조치간에 차

이점과 유사점

- 제삼국 수출 및 소급성개념등의 식품의 최종 처리
- 국제정부 및 비정부기구에서 설정된 기준

## □ 합의사항

동분과위원회는 호주, 네덜란드, 일본, 미국 및 EC의 지지아래 기존 '식품안전사고발생시 정보교환지침서(CAC/GL 19-1995)'에 일반지침 및/또는 특정 식품안전관리계획등을 포함하여 기존 지침서를 확대하기로 하였다. 향후 24차 총회에 신설작업으로 상정하기로 하였다.

아. 수출식품관리제도 지침서

8차 동분과위원회 회의(00. 2)에서 모로코의 제안으로 금번 9차 회의시 수출식품관리제도지침설정 필요성을 검토하기로 한 것이다. 의장은 동 제안서는 수입식품 관리제도와 병행하여 수출식품 관리제도를 설정하자는 제안이며 이 사항은 식품수출입관리 및 검사분야의 업무임을 소개하였으나 동지침서 설정을 고려하기 위해서 동분과위원회 작업 프로그램과 수입관리 관련 현행 CODEX 기준의 적절성에 대한 검토를 선행하고자 제안하였다.

의장은 수출식품관리제도는 시장확대 등의 목적을 위해 정부에서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수출관리는 수입식품관리제도에 통합되어야 하고 수출관리제도는 이미 FAO Series of Manuals of Food Quality Control : Food for Export에서 다루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 □ 합의사항

동분과위원회는 현재 중요한 작업프로그램이 산적해있는 관계로 수출식품 관리제도에 대한 지침서를 설정하지 않기로 하며 필요하다면 향후 회의에서 검토하자고 합의하였다.

### 자. 기타 사업 및 향후 작업

#### A. 추적성(Traceability)

동의제는 생명공학응용식품 작업반의 의장국인 일본에서 의제 채택(의제 1) 논의시 추적성에 대한 토의를 제안하여 의제 10에서 다루기로 합의한 것이다. 일본대표단은 추적성(traceability)이 어류 및 어류제품, 동물사료작업반, 생명공학작업반등의 CODEX 분과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추적성의 개념은 광범위하며 현재까지 CODEX 내에서 구체적으로 논의된 바 없고 그 개념조차 규정된 바 없음을 소개하였다. 이 사항은 식품 수출입검사 및 관리제도와 관련하여 중요한 사항으로서 동분과위원회에서도 논의되어야 한다고 제안한 결과 동 분과위원회에서는 CODEX 내에서 추적성 논의 필요성에 대하여 동의하였다.

Dr. Alan Randell(CODEX 사무국)은 동제안에 대해 식품위생, 식품표시, 식품첨가물 및 오염물질, 동물사료, 생명공학응용식품, 어류 및 어류제품등에서도 추적성에 대한 작업을 추진했거나 추진중에 있다고 설명하며 동개념이 여타 CODEX 분과위원회와 관련이 있는 만큼 추적성의 제도 모델은 CCFICS 업무분장이나 논리적으로 CODEX 정의 검토는 일반원칙분과위원회에서 이

루어져야 한다고 권고하였다.

EC 대표단은 추적성이 위해관리의 한 도구로서 식품위생뿐만아니라 제품의 완전성(Integrity)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일반원칙분과위원회에서 먼저 정의와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캐나다 대표는 추적성에 대한 토의문서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우리나라는 국제교역시 식품안전제도의 중요한 한 사항으로서 일본 대표단을 지지하였고 국제소비자식품기구협회(International Association of Consumer Food Organizations)는 개별분과위원회에서 개별 업무분장가운데 실재적인 적용논의를 통해 정의를 규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미국대표는 개념정의보다는 추적성의 목적과 적용문제를 논의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언급하였다. 뉴질랜드대표는 국가차원의 개념사용시 현재 경험이 검토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 □ 합의사항

여러 논의 끝에 동분과위원회의 업무분장내에서 논의할 책임이 있으며 이사항에 대해서는 실재적인 토의필요성이 있음을 인정하여 사무국에서 차기 총회에서 검토될 수 있도록 문서작성을 권고하였다. 또한 일반원칙, 작업반 등 해당 CODEX 분과위원회에 이 사실을 알리기로 하였다.

### 차. 차기 회의 날짜 및 장소

차기 회의는 2002. 2. 25~3. 1 개최하기로 하고 장소는 결정하지 않았다.

### Ⅲ. 결 언

동분과위원회는 SPS 협정과 TBT 협정중 식품의 수출입검사 및 인증제도 분야 이행 조치(measure)에 관한 국제 기준을 작성하는 정책적 성격의 분과위원회로서 금번 회의에는 제도에 관한 실제이행지침서를 주로 논의하였다. 즉 증명서 작성 및 발급지침서(8단계), 위

생조치의 동등성판정지침서(5/8단계), 입 식품의 관리제도지침서(5단계) 등이 총 회에 상정되는 결과를 낳아 상기한 분야의 국제기준이 설정될 전망이다. 따라서 상기한 논의 분야의 국제기준에 대한 지속적인 조사연구가 필요하며 이후 지속적인 회의참석으로 회의방향 분석 및 필요시 국가의견 제출이 필요하다고 평가된다.